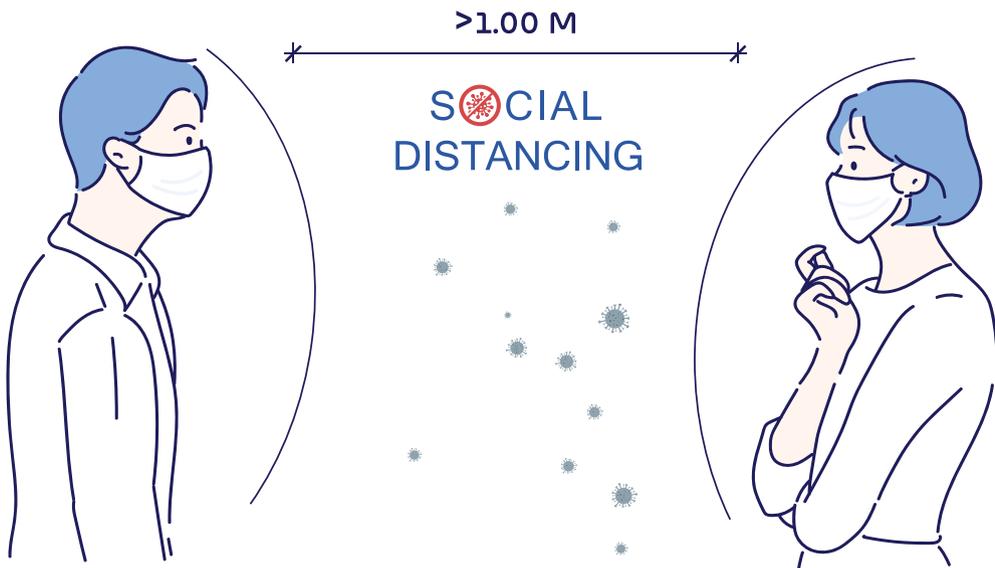


코로나19(COVID-19)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2020. 11. 12 고용노동부



- ◆ 월간 「산업보건」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른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‘사업장용’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소개합니다.
- ◆ 본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전면 개편됨(‘20.11.1)됨에 따라,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.
- ◆ **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.**
- ◆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.

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→ 공지사항 → 8225[공고]
「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」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〈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〉

구분		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		생활방역	지역 유행 단계		전국 유행 단계	
		생활 속 거리두기	지역적 유행 개시	지역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유행 개시	전국적 유행 본격화	전국적 대유행
핵심 지표	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(명)	(수도권) 100명 미만	(수도권) 100명 이상	※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.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	전국 400명~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	전국 800명~1,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
		(타권역) 30명 미만 (강원·제주는 10명 미만)	(타권역) 30명 이상 (강원·제주는 10명 이상)			
보조 지표	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,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, ③역학조사 역량, ④ 감염재생산 지수,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,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,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					

* 특히 2.5~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

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
〈공통사항〉

- 사업장에 전담 조직 또는 전담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
- 밀집도, 환기상태,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, 전체 노동자*에게 매뉴얼 안내·교육 등을 통해 전파
- 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외국인 근로자 포함
-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, 보건소·의료기관(선별진료소, 이송병원 등)과 비상연락체계 구축

2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〈단계별〉

-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
-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		인원의 1/30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

소식 보기

: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3 회의 · 출장 및 집합 · 모임 · 행사 (단계별)

※ 치안 · 국방 · 외교 · 소방 · 우편 · 방역 · 방송 · 산업안전 ·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※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 ·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 · 밀집 사업장*은 방역수칙** 준수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**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

• 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는 온라인 또는 영상*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 할 경우 방역수칙**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

*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

*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· 협의		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(100인 미만)로 실시	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(50인 미만)로 실시	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소규모(10인 미만)로 실시

• 소규모 모임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모임,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시,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 · 협의 - 비필수적인 회식은 1.5단계에서는 소규모(100인 미만)으로 실시		100인 이상의 모임 · 행사 금지*	50인 이상의 모임 · 행사 금지*	10인 이상의 모임 · 행사 금지*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•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,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

-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

-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,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(휴가, 재택근무, 휴업 등 활용)

**4 의심증상
모니터링 및
유증상자
발생 시 조치
〈단계별〉**

-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(37.5°C 이상) 확인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여부 확인
 ※ 열화상카메라는 스크리닝으로 활용, 정확한 체온은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체온계로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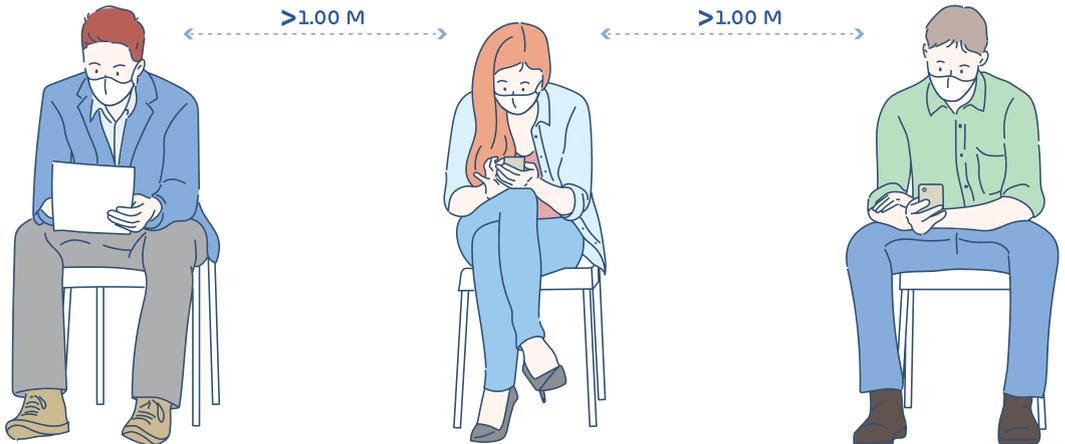
〈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〉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매일	1일 2회 이상		1일 2회 이상 * 필요시 검사결과 기록	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 등을 활용*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
 * 회사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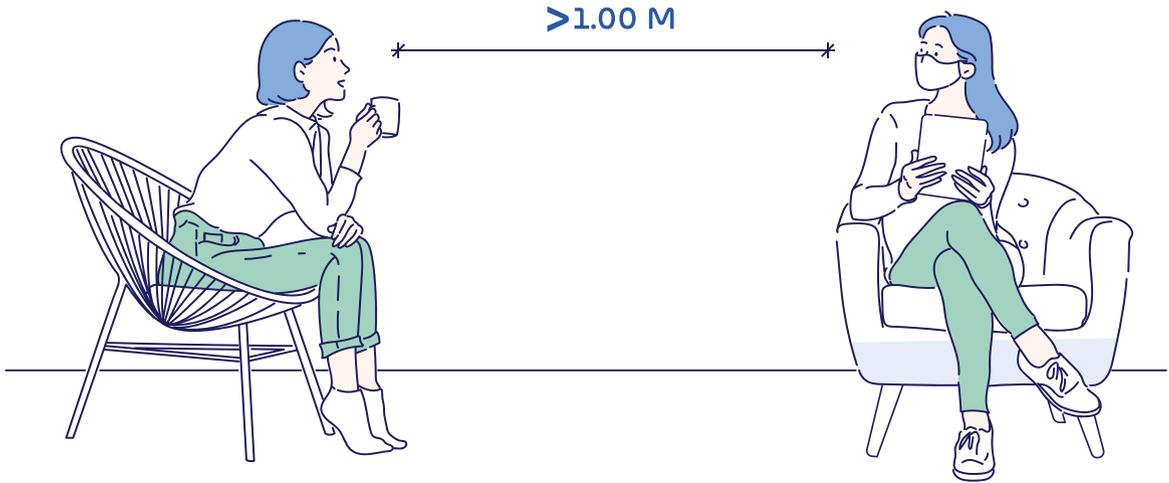
**5 사무공간 및
구내식당·
휴게실 관리
〈단계별〉**

-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
 - 1.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 - 2.5단계부터는 식사시 대화 금지



소식 보기

: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사업장용)



6 소독 및 위생·청결 <단계별>

- 실내 휴게실, 탈의실, 흡연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, 이용 시 마스크 착용
 -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,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
 - 2.5단계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폐쇄

-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
 - 2.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
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 자제
 - 2단계부터는 금지
-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소독, 방역수칙 준수
 - 단계에 따라 탑승자 기록, 음식물 섭취 금지, 한자리 띄어 앉기 등 하기

<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>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차량 소독(매일),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	1단계 + 탑승자 기록	1.5단계 + 음식물 섭취 금지		2.5단계 + 한자리 띄어 앉기